

6. 地方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內務部令 第510號 1990. 7. 26 公布.

지방세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징수교부율)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중 “취득일로부터 20일내”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7(수입금액의 계산방법등)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 및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

의4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

(1) 임대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의4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임대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실제로 수입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작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 본문 중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를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로 한다.

제47조의2중 “1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47조의4 본문 단서중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부동산가액”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월”을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초과부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공장용 부동산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 준액에 의한 이전공장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공장용 부동산가액의 차액
-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납부명세의 기재를 생략하는 등 기·등록) ①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법 제132조 제1항 제5호, 법 제132조의2 제3호, 법 제136조 제2호,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있어서는 납부서 서식 중 납부명세란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경륜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8.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제57조 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 볼링장업·정구장업·골프연습장업·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련장업·미용제조장업·당구장업

제57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제57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것.

제57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영장업·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제57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19**를 각각 **제104조의14** 내지 **제104조의20**으로 하

고, 제10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농가의 범위) 영 제194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04조의15(종전의 제104조의1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

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등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 나. 대도시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대도시내에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으로 함(제47조의2).
- 다. 면허세 과세대상에 각종 체육시설업의 면허를 추가하여 그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함(제57조).
-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분리과세 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내무부 제공〉